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2022년 12월 19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8월 29일, 심미경 의원 외 29명
-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- 상정일자

-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
(2022년 12월 19일 상정, 수정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심미경 의원)

1. 제안이유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, 현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게 되어있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내에서 호선하도록

규정하여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0명의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,民間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(안 제6조제3항).
-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(안 제6조제4항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9일 심미경 의원 등 29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122호로 발의되어 2022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위원장·부위원장 선임 방식의 변경을 통해 기금운용 심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은 “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면서, 같은 조 제3항에서 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,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최소 비율을 3분의 1로 규정하는 것 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다만, 위촉직 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에 있어 “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·재기재한 경우 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었을 때 조례의 효력에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, 입법경제상 제정의 실익이 낮을 수 있다”는⁴⁾ 점에서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 심의위원회 구성 전반을 다루는 동 조례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행기관에 상위법의 규정 사항을 인지시킨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「지방기금법 시행령」 제7조 제1항과 조문 내용상의 중복성을 이유로 위촉직 위원 비중을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 -13500, 2022.9.6.).

2)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식에 관한 검토

- 안 제121호 제7조제2항, 안 제122호 제6조제4항 및 안 제124호 제6조제1항제1호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현행 조례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당연직 위원인 부교육감과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부 개정조례안의 동 조문은 심의 과정 전반에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을 예방하고자

4) 법제처(2018), 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, 9쪽.

있는 최소한의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3)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및 용어에 관한 검토

- 안 제121호 제7조제3항제2호, 안 제122호 제6조제5항제2호는 위촉직 위원 중 “민간 전문가”라는 용어를 “전문가”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와 법령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혼행과 같이 「지방기금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“민간 전문가”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3500, 2022.9.6.).
- 그러나 안 제121호 제7조제1항 및 안 제122호 제6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을 정의함에 있어 “공무원이 아닌”이라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상위법령에 “민간 전문가”로 명시되어 있는 용어를 “전문가”로 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더라도 “민간 전문가”를 “전문가”로 규정한다고 해서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거나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.
- 한편 안 제124호 제6조제1항제2호와 제3호는 심의위원회 위원을 크게 “당연직 위원”과 “민간위원”으로 구분하고 있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.
- 이는 위원회 위원 구성을 크게 위원의 자격이나 선임 방법에 따라 구분했을 때 각각 ‘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’, ‘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’으로 구분함에 비추어 볼 때 조례상 용어 사용의 혼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“당연직 위원”을 “공무원 위원”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관계 규정이 개정될 경우 현행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부교육감과 소관부서 국장이 삭제되므로, 안 제121호 제7조제3항 제1호와 안 제122호 제6조제5항제1호에 각각 “부교육감, 교육 행정국장”과 “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”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3500, 2022.9.6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

-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(안 제6조제4항).
-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추가하고, 위촉직 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함(안 제6조제5항).
- 안 제6조제5항을 수정함에 따라 경과조치에 수정 사항을 반영함 (부칙 제2조).

VII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12월 19일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 제6조제4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최종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받고 있는바, 기금 운용사무의 일부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함.
- 또한, 당연직 위원 구성은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6조제5항에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추가하고, 위촉직 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기금 운용 전반에 있어 지방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(안 제6조제4항).
- 나.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추가하고, 위촉직 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함(안 제6조제5항).

다. 안 제6조제5항을 수정함에 따라 경과조치에 수정 사항을 반영함(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4항 중 “위원회의 위원장 및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”로 하고, 같은조 제5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추가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 - 나.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 - 다.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 - 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부칙 제2조 중 “제6조제3항 및 제4항의”를 “제6조제3항 및 제4항, 제5항의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</p> <p>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연직 위원: <u>교육행정국장</u>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 2. 위촉직 위원: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<u>민간</u> 	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(이하 “위촉직 위원”이라 한다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u>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위촉직 위원 : <u>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</u> 	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연직 위원 : <u>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, 교육행정국장</u>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 2. 위촉직 위원 : <u>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</u>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(이하 “위촉직 위원”이라 한다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기획조정실장이 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“교육행정국장”을 “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, 교육행정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위촉”을 “위촉직”으로 한다.

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나.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다.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
제3항 및 제4항,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0명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기획조정실장</u>이 된다.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<u>교육행정국장</u>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 2. 위촉직 위원 : <u>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</u>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3명</u>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(이하 “<u>위촉직 위원</u>”이라 한다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p> <p>④ -----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, 교육행정국장</u>----- 2. 위촉직 위원 : <u>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</u> 중 <u>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</u></p> <p>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나.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</p>

<신설>

<신설>

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
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다.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
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
문가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⑥ 위촉직 -----
-----.